

## 서울특별시 2018년 제4회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제4회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5조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2조,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28일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선발예정 직위 및 인원

가. 직 위 : 지방전문경력관 다군(고압전기 안전관리)

나. 채용인원 : 1명

다. 근무기관 : 상수도 사업본부

라. 직무분야

임용분야	임용등급	임용인원	근무예정기관	담당직무 내용
고압전기 안전관리	전문경력관 다군	1명	상수도 사업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보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</li><li>-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·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</li><li>- 전기설비의 운전·조작 및 업무감독</li><li>-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</li><li>-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</li><li>- 전기설비의 일상점검·정기점검·정밀점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</li><li>- 전기재해의 발생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응급조치</li><li>- 기타 직무 관련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</li></ul>

## 2. 응시자격 (기준일 : 면접시험 최종일)

가. 응시연령 : 18세 이상 (2000.12.31 이전 출생자)

나. 거주지 : 제한 없음

다.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※ 임용 예정일(2018. 8월 중)을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 만 응시가능

라. 응시결격사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### 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※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
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▶ 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▶ **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**
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정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- 5-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**마.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**

구 분	자격요건	관련법령
고압전기 안전관리	- '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' - '전기기사' 또는 '전기기능장'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	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

※ 경력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.

※ 전기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: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소지 후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한 경력(안전관리원 및 안전관리보조원 경력은 제외)

※ 경력증명의 경우 해당 직무와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. 불분명한 경력기재 및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임.

### 3. 시험 일정 및 방법

#### 가. 시험 일정

내 용	일 정	장 소
응시원서 접수	2018. 7. 9(월) ~ 7.11(수)	방문·우편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18. 7.26(목)	서울시홈페이지 등
면접시험	2018. 8. 2(목)	서울시인재개발원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18. 8. 6(월)	서울시홈페이지 등

#### 나. 시험 방법

##### 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임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

※ 서류전형 기준 : 응시요건 적합성, 직무수행 능력, 채용분야 근무경력 등

##### 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-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·인성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※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.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4. 응시원서 접수

가. 응시원서 : 별도 첨부 사용 (첨부1)

나. 접수기간 : 2018. 7. 9(월) ~ 7.11(수) 09:00~18:00

○ 점심시간(12:00 ~ 13:00)은 제외
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

○ 마감일 근무시간(2018. 7.11. 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

라. 접수장소 :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

○ 주 소 : (06756)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 
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※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영수증, 매출전표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
※ 우편접수지는 봉투 겉면에 「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」를 기재해야 하며,  
접수여부는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,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.

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 5. 제출서류 (원본 서류 제출 원칙)

가. 응시원서(첨부1) 1부

○ 응시수수료(다균:5,000원)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(영수증, 매출전표)

※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. (판매장소 : 서울시 열린민원실(02-2133-7908), 자치구 '재무과')

### ※ 열린민원실에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매방법

1. 현금구매 시 :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

2. 신용카드 : 매출전표 발행

3. 지방 등 원거리 일 때 :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후 구입 영수증 출력 첨부  
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(☎ 02-2133-7908), 자치구 재무과

※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매출전표)를 취급하나, 사전에 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매출전표)를 구매하여야 함.

☞ 자치구 수입증지(매출전표)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

※ 원서접수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, 자치구에서 구입 시에는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이력서(첨부2) 및 자기소개서(첨부3) 각 1부

※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<http://www.nhic.or.kr>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다.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) 1부

라.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(첨부5) 1부

마. 주민등록초본 1부 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

바. 학위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증명서 1부

※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

사.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1부

※ 경력확인서 발급불가 시, 관련분야 경력(재직) 증명서(이력서에 제시된 경력)

아.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및 해임신고증명서

※ 경력확인서 및 경력(재직)증명서에 제시된 '모든 경력'에 대한 증명서

자. 자격증 사본

차.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 자료 (해당자에 한함)

## 6. 유의사항

가.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나.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·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여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

다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
## 7. 기타 참고사항

가.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

나.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

다.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 적용을 받으며, 채용자의 경력사항 호봉 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함

※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'유사경력'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,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라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○ 직무내용 관련 문의 :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(☎ 02-3146-1120)

○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(☎ 02-3488-2343)

# 직무기술서

<b>임용예정기관명</b>	<b>근무예정부서</b>
상수도 사업본부	광암아리수정수센터

<b>주요업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기설비의 공사.유지보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</li> <li>○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.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</li> <li>○ 전기설비의 운전.조작 및 업무감독</li> <li>○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</li> <li>○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</li> <li>○ 전기설비의 일상점검.정기점검.정밀점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</li> <li>○ 전기재해의 발생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응급조치</li> <li>○ 기타 직무 관련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<b>필요역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공통 역량</b> :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</li> <li>○ <b>직급별 역량</b> :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</li> <li>○ <b>직렬별 역량</b> :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<b>필요지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기설비 공사.유지보수, 운전.조작,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식</li> <li>○ 전기재해 예방, 응급조치에 관한 지식 등</li> </ul>
-------------	--

<b>응시자격요건</b>	<b>관련분야 : 고압전기 안전관리 분야</b>	
	<b>자격증 및 경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전기분야 기술사' 자격소지자</li> <li>○ '전기기사' 또는 '전기기능장'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/ul>